



##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

※ 본 양식은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미성년자가 수익자이면서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대표로 친권행사를 하는 확인서입니다.

### ● 확인 내용

미성년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연락처
친권자(부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연락처
친권자(모)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연락처
대표 친권자 행사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	다른 친권자의 동의 또는 위임을 받아 친권을 행사		
	<input type="checkbox"/>	친권자 1인 지정(이혼 등)		
	<input type="checkbox"/>	다른 친권자 사망		

### ● 확약 내용

본인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기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(대표친권자)임을 확인하며, 차후 다른 친권자로부터 이의가 있거나,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본 청구로 인하여 받은 모든 보험금 등과 그에 대한 이자를 귀회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.

확약 일자 :  
확약 자(대표 친권자) : (서명 또는 인)

### ● 주의사항

1.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중 일방에게 지급(가입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지급, 가입자가 수익자의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미성년자 기준의 『가족관계증명서』 제출)
2.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 ‘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’ 와 함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.
3.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인 자로(민법 제4조), 미성년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(민법 제911조).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(친권상실선고 또는 대리권,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등을 받은 부 또는 모, 이혼 시 친권행사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 또는 모)는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.
4. 단,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자로 봅니다(민법 제 826조의 2). 혼인은 법률혼(혼인 신고를 한 경우)만 해당합니다.
5.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,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(민법 제909조).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
6. 이혼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친권자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발급을 통해 친권 확인이 가능합니다.
7. 본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 법정대리인(친권자, 후견인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우 위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[최종개정일자: 2014.2.]